

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·안전기준(제49조의2 관련)

구분	서비스·안전기준
1. 숙박위생	<p>가. 객실·접객시설·복도·계단·욕실·샤워시설·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, 매일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</p> <p>나. 이불·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,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</p> <p>다.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</p>
2. 식품위생	<p>가.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·관리할 것</p> <p>나.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, 조리에서 사용되는 도마, 칼,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·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·관리할 것</p> <p>다.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·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</p> <p>라. 객실에는 「먹는물관리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갖춰두도록 하고,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</p>
3. 소방안전	<p>가. 소화기는 작동가능 여부 및 충전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·관리할 것</p> <p>나.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수시 점검을 통해 경보기능이 가능하도록 할 것</p> <p>다. 투숙객이 취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취사시설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것</p>
4. 그 밖의 사항	<p>가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</p> <p>나. 청소년(「청소년 보호법」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)에 대하여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</p>